투자권유준칙

제 정 2022.06.1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 및 적용범위)

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어라운드 자산운용 (이하 "회사"라 한다)에서 투자자를 ⑨대로 집합투자증권(법 제279조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매매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(이하 "투자권유업무"라 한다)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다만,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, 법시행령, 법시행규칙,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(이하 "관계법령등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"투자권유"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정 투자자를 ⑨대로 금융투자⑨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·투자일임계약·신탁계약(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)

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⑨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,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,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한다.
-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된다.

제2장 투자자 구분

제4조(방문 목적 확인)

-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.
-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.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5조(일반·전문투자자의 구분)

-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⑨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⑨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.
- ③ 주권⑨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⑨품 거래를 하는 ⑨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. 단,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⑨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.

제3장 투자권유

제6조(투자권유 절차)

- ① 임직원 등은 법 제46조 제3항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 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⑨품에 투자자 가 투자하고자 하는 ⑨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⑨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,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.

제7조(투자권유시 유의사항)

-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 - 1.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
 - 2.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

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
- 3.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·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. 다만, 증권과 장내파생⑨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⑨우는 제외한다.
- 4.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.
- 가.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
- 나.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⑨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. 이 ⑨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⑨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⑨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- 1) 금융투자⑨품: 채무증권, 지분증권, 수익증권, 투자계약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, 장내파생⑨품, 장외파생⑨품
 - 2)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
 - 가)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
 - 나) 장내파생⑨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
 - 다) 장외파생⑨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
 - 3) 신탁계약
 - 가)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
 - 나)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
- 5. 투자자(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⑨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) 로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와 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
- 6. 관계법령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·물품·편익 등의 재산⑨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
-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⑨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 리하다고 판단되는 ⑨우,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⑨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 할 수 있다.
-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⑨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 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.

제8조(손실보전 ⑨의 금지)

임직원 등은 금융투자⑨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,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⑨우,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⑨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⑨우를 제외한다.

①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

- ②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
- ③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
- ④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

제9조(설명의무)

- ① 회사는 투자자를 ⑨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⑨우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, 재산⑨황 및 투자⑨험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에 관한 구조와 성격, 투자대⑨ 등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특성, 구체적인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, 실적배당 및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등 집합투자의 일반적인 특성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당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집합투자⑨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된다.
- ③ 회사가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집합투자증권(또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계약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투자자가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이 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⑨우, 회사는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)

-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③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- 1.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(가격변동위험, 투자기업의 부도위험, 금리 변동위험 등) 외에 추가적으로 환율변동위험이 따른다는 사실과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헤지비율
 - 2. 투자대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 자산별 투자비율
 - 3. 투자대의 국가 또는 지역의 ⑨제, 증시⑨황 등의 특징
- ②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⑨우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⑨ 국가 또는 지역의 ⑨제, 증시⑨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(파⑨상품, 부동산,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)

- ① 회사가 투자자에게 파생⑨품, 부동산,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⑨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- 1.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특성 외에 추가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⑨인 파생⑨품, 부동산,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(구체적인 구조, 투자대⑨ 등)
- 2.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⑨인 파생⑨품, 부동산,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투자위험

- 3. 투자대⑨ 파생⑨품. 부동산.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
- ② 회사는 파생⑨품, 부동산,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이 동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장 기타 영업 행위 준칙

제11조(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)

- ① 회사는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1.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
- 2.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
 - 3. 투자자에게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, 그 밖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
 - 4.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⑨ 특정 국가, 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미만인 ⑨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설명 및 광고자료 등에 특정 국가, 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
제12조(투자자정보의 이용금지)

- ① 회사(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자의 정보를 자신의 고유업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- ② 회사는 고유업무(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)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
제5장 보칙

제13조(투자광고)

- ① 회사가 영위업무 또는 집합투자⑨품에 관한 광고(이하 "투자광고"라 한다)를 하고 자 하는 ⑨우 법 제57조, 법시행령 제60조 및 규정 제4-11조 및 제4-12조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⑨품에 대해 광고하는 ⑨우 투자대⑨ 국가 및 지역의 ⑨제, 증시전망을 객관적인 발표, 조사 자료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예측하여

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4조(투자권유행위⑨의 점검)

- ① 협회가 회사(투자권유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협회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⑨우 회사는 관련 자료 제출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 준법감시인은 투자권유의 투자권유준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합의관할)

회사와 회사의 투자권유 임직원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⑨우 그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6조(기타)

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, 법시행령, 규정 및 협회관련규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 【시행일】

이 준칙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